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0100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8. 01. 31.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11. 19.

더 브라운(THE BROWN) 정보공개서

(주)프리스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프리스코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 대 표 전 화 : 070-7726-7452
- 팩 스 : 031-731-2463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70-7726-745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X. 기타 첨부서류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상 호	사용 브랜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프리스코	더 브라운(THE BROWN)	김 양 수	070-7726-7452	031-731-2463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22. 09. 01.	2022. 09. 01.	110111-8411590	645-88-02508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이 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김 양 수	더 브라운 (THE BROW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양 수	070-7726-7452	031-731-2463
이 사	이 춘 호	더 브라운 (THE BROW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양 수	070-7726-7452	031-731-2463
이 사	임 영 기	더 브라운 (THE BROW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양 수	070-7726-7452	031-731-2463
감 사	이 도 현	더 브라운 (THE BROW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양 수	070-7726-7452	031-731-246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당사가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	(주)프리스코	『더 브라운(THE BROWN)』	2023. 10. 13.
	주 소		대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김 양 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더 브라운(THE BROWN)』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 브라운(THE BROWN)	『더 브라운(THE BROWN)』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선한 베이커리와 함께 홈메이드 건강식, 프리미엄 커피 및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카페 스타일로써 천연발효종 베이커리를 사용하며 프랑스산 천일염인 게랑드 소금을 사용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연구·노력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상 호	더 브라운(THE BROWN) 000점	가맹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 표		p3 참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 고
2021년	-	-	-	-	-	-	법인 미설립
2022년	43,585,998	3,697,498	39,888,500	537,966	-4,830,435	-4,681,726	
2023년	47,739,112	13,096,138	34,642,974	1,364,077	-723,394	-1,191,73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 양 수	대표 이사	2022. 09. 01. ~ 현재	(주)프리스코 대표이사	총괄 업무
	이 춘 호	이 사		(주)프리스코 이사	기획 및 영업 업무
	임 영 기	이 사		(주)프리스코 이사	
	이 도 현	감 사		(주)프리스코 감사	감사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명)

시 점	임원 수		직원 수
	상 근	비상근	
2023. 12. 31.	1	3	4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상 호/이 름	구 분	기 간	사업 내용	비 고
특수관계인	김 양 수	가맹사업 경영	2020. 01. 01. ~ 2023. 10. 12.	『더 브라운(THE BROWN)』 (등록번호 : 20180100)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 가맹사업 경영	합병 전 법인
	이 춘 호				
	이 도 현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는 『더 브라운(THE BROWN)』 브랜드에 대하여 (주)프리스코(합병 전 법인)가 (주)더브라운베이커리와 체결된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 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이미지			
명 칭	THE BROWN	권리내용	서비스표(43류)
등록일	2013. 05. 20.	등록번호	4102592560000
등록권리자	(주)더브라운베이커리	등록만료일 (당사의 사용기간)	2033. 05. 20.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02월 01일(당사는 ㈜프리스코(합병 전 회사명)를 2023년 10월 13일에 흡수합병 함)

2. 『더 브라운(THE BROWN)』의 연혁

(단위 : 년. 월. 일)

상 호	영업 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 소	비 고
(주)더브라운 베이커리	더 브라운 (THE BROWN)	김 양 수	2013. 10. ~ 2018. 01. 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 177(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403~407호)	
CNH홀(주)			2018. 02. 01. ~ 2018. 03.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23, 3층(대치동, 구일빌딩)	
(주)프리스코			2018. 03. 29. ~ 2018. 04. 09.		
			2018. 04. 10. ~ 2020. 04. 0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56-3, 4층(서초동, 한라빌딩)	
			2020. 04. 08. ~ 2023. 01. 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2길 34, 2층(공덕동, 소담빌딩)	
			2023. 01. 06. ~ 2023. 0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 201호(공덕동)	
			2023. 01. 13. ~ 2023. 10.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4, 2층(공덕동)	흡수 합병
(주)프리스코			2023. 10. 13. ~ 현재		

3. 『더 브라운(THE BROWN)』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더 브라운(THE BROWN)	제과제빵	샌드위치, 브런치, 커피, 음료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는 ㈜프리스코(합병 전 회사명)를 2023년 10월 13일에 흡수합병 함에 따라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1	11	-	6	6	-	3	3	-
서 울	4	4	-	1	1	-	1	1	-
부 산	1	1	-	1	1	-	1	1	-
대 구	1	1	-	-	-	-	-	-	-
인 천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1	1	-	1	1	-	-	-	-
세 종	-	-	-	-	-	-	-	-	-
경 기	4	4	-	3	3	-	1	1	-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	-	-	-	-	-	-	-	-
경 북	-	-	-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	-	-	-	-
비 고	흡수합병 전						흡수합병 후		

5. 바로 전 3년간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 수

당사는 (주)프리스코(합병 전 회사명)를 2023년 10월 13일에 흡수합병 함에 따라 바로 전 3년간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비 고
2021년	15	0	0	4	0	11	흡수합병 전
2022년	11	0	0	5	0	6	
2023년	6	0	1	2	0	3	흡수합병 후

6. 『더 브라운(THE BROWN)』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더 브라운(THE BROWN)』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소수점 이하 반올림, VAT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매출액은 가맹점의 POS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된 2개 가맹점 및 계약이 종료된 1개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 및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가맹점의 투자규모, 가맹교육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맹사업법』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더 브라운(THE BROWN)』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연 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비고
-----	-------------	---------	----

2023년	3	2,159	계약체결일 기준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본부(지사 또는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당사가 2023년에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홍보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미포함)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	-	-	-	-	-	-
-	-	-	-	-	-	-
소 계			-	-	-	-
합 계					-	-

11. 가맹금 예치기관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 번호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99-1114

(2)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체결일]에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프리스코]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당사에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①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②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③ 귀하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위 ① ~ ③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당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비	11,000	계약체결일
교육비	3,300	
총 계	14,300	
반환 조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의 미 이수 등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운영권 부여, 계약기간의 만료, 교육의 이수 등	
비 고	귀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시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사가 제공한 용역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 보증금

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	상품대금의 미지급 등
비 고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이행보증금	3,000	VAT 제외
총 계	17,300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그 밖에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설계도면비·검수비 및 출장비 제외)은 다음 표와 같으며 귀하가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브랜치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계약체결 후 별도로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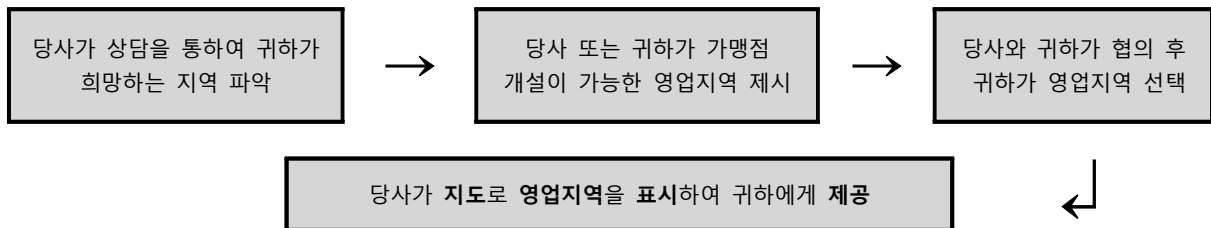
(단위: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포함)

구 분	지급대상	A-TYPE [99㎡(30평) 기준]		B-TYPE [165㎡(50평) 기준]		지급기한	반환조건
		금 액	면적 3.3㎡당 금액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인테리어	협력업체	56,683	1,889	94,600	1,892	분납제도 p12 참조	착공 10일 전 계약 취소
간판	당 사	17,072	569	18,172	363		
가구(제작/이동식)		24,123	804	29,700	594		
기기·장비	협력업체	30,338	1,011	31,900	638	준공일	공급 10일 전 계약 취소
기물·비품	협력업체	4,950					
초도물품 대금	당 사	4,950					
총 계		138,116		184,272			
기 타	○ 기준금액은 인건비, 원자재 수급, 물가변동, 매장의 크기, 설치비 등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파시드(전면 6M 기준), 외부가설, 화장실(3평 기준), 테라스(3평 기준), 전기(1차 인입), 전기증설, 소방, 철거, 용도변경, 음향, 가스배관, 공조, 냉난방 등 추가공사는 별도임. ○ POS는 업체지정 기본사양에 대한 정보 제공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업지역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을 받기 위한 기준	계약·채용 기준
귀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	
종업원	만 18세 이상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귀하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다만, 브랜치를 추가하는 경우 그 물품내역 등은 계약체결 후 별지로 제공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분납제도

당사는 귀하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금	잔 금
금 액	총 공사금액의 50%	나머지 50%
지급시기	계약체결일	가구, 기기장비 입고일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1) 정기지급금, 광고·판촉 부담금, 교육비 및 지연이자

구 분	정기지급금	광고·판촉 부담금	교육비	지연이자
지급 대상	당 사			
금 액	매월 순매출액의 2.2%	p22 참조	p26 참조	년 20%
지급 기한	매 익월 5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기한 내 지급	지급기일의 익일 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조건	-	광고·판촉행사를 미 실시한 경우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
반환할 수 없는 사유	-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경우	-

(2) 상품대금, POS 사용료, 방충·방서비용 및 보안시스템·CCTV

구 분	상품대금	POS 사용료	보안시스템 · CCTV	
지급 대상	당사	KICC테크놀러지 등	캡스	에스원
금 액	발주(주문)금액	무상	88	33
			121	
지급 기한	발주(주문)일	-	해당 월말	
반환 조건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내용에 따름.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상품을 공급한 경우			

(3) 방충·방서비용, 위생 상태 점검, 음원서비스 사용료 및 폐컵 수거비용

구 분	위생 상태 점검	방충·방서비용	음원서비스 사용료	폐컵 수거비용
지급 대상	당사가 자정한 자 (현재 미지정)	렌토킬	플랜티넷	대원리사이클링 등
금 액	추후 공지	월 35~40	월 15.4	월 16.5
지급 기한	추후 공지	해당 월말		
비 고	음원서비스 사용을 위한 셋탑박스 임대료 별도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화재보험, 영업표지 변경비용 및 점포환경 개선비용

구 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화재보험	영업표지의 변경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 대상	당사가 선정한 자		당사가 선정한 자 또는 ㈜힘디자인 등	

금 액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름	p24 참조
지급 기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서비스 상태	고객 서비스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상품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표준레시피 준수	표준레시피 준수여부 점검		
품질기준 준수 및 상품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 및 상품 관리상태 점검		
매출관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점검		
각종 설비 및 장비관리 등	각종 설비 및 장비 관리상태 점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재가맹비	지급 시기	비 고
	2,200	계약이 갱신되는 날부터 14일 전에 지급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사업 양도에 대한 통지 및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는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가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양도를 승인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당사의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④ 양도를 거절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

N)』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하고 동의여부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는 정해진 기간까지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가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영업표지로 변경(p24 참조)하여야 하며 ④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영업표지에 대하여 거절한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와는 가맹계약 해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으로 당사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사실 통지하고 ② 당사와 귀하를 포함한 모든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 간에 협의 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 부담부분

귀하가 운영하는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나) 양수인 부담부분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①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하거나 ②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귀하의 가맹계약 잔여기간 승계	신규 가맹계약 체결	비 고
가맹비	-	11,000	
이행보증금	3,000	3,000	VAT 제외
교육·훈련비	3,300	3,300	교육·훈련 이수 후 즉시 소멸
총 계	6,300	17,3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운영매뉴얼 등 모든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재 중인 광고 등도 철거·회수·삭제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상품(상품,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념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귀하와 협의하여 정하며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단위 : mm)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당사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업자로 부터 물품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천원, VAT 미포함/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더 브라운(THE BROWN)』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으로 수취하는 이익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브라운(THE BROWN)』 판매상품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샌드위치, 브런치, 커피, 음료 등	①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함. ② 지정된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함. ③ 표준레시피를 준수하여야 함 등.	계약해지 등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더 브라운(THE BROWN)』 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외에 귀하 또는 제3자 명의의 점포 내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더 브라운(THE BROWN)』 판매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년, 월)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권장가격은 귀하가 당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1) 당사(이하 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베이커리-케익-브런치-커피 전문점	가맹본부	계열회사
	『더 브라운(THE BROWN)』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1개 가맹점	계약서 내에 영업지역 표시 및 별지에 지도로 표시
다만,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대학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상권으로 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영업지역 조정절차

당사가 영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① 귀하에게 영업지역 조정안 통지서를 보내면 ② 귀하는 당사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이 방문한 경우 그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간 만료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거절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갱신 거절사유

-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나) 계약 종료 사유

-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1) 당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
- ②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를 동일성과 동일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사용 또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획득할 수 있는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③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 ④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⑤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⑥ 귀하가 2회 이상 정기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귀하가 재가맹비를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귀하가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간판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영업표지와 관련된 간판 등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귀하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⑩ 귀하가 사전 승인 없이 최초 설계·시공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합의하여 설계·시공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하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서면으로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당사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귀하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당사가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에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귀하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②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 ③ 당사가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④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⑤ 당사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당사의 승인이 존재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예비 양수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귀하에게 양도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훈련 이수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 당사는 귀하의 법적 상속인의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가능 조건	상속 절차	비 고
법적 상속인인 경우 가능	상속인이 당사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상속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상속인에게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상속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훈련 이수

나)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임대 또는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더 브라운(THE BROWN)』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인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일반인에게 베이커리-케익-브런치-커피를 판매하는 업종	귀하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가맹사업부 070-7726-745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시, 분)

구 분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A-TYPE	07:00 ~ 21:00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가맹사업부 070-7726-7452

『가맹사업법』 제15조제10호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인 이상을 점포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인원은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서비스 상태, 표준레시피 준수, 품질기준 준수, 상품관리, 매출관리, 각종 설비 및 장비관리 등	월 1회 이상	상품공급 중단/계약해지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더 브라운(THE BROWN)』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의 광고·판촉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판촉활동 등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광고 선전 성격	부담 비율		부담 절차	비 고
		당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판촉	브랜드, 상품 등 광고·판촉	전체 광고·판촉비의 50% 부담	가맹점사업자들이 나머지 50% 안분	사전 약정 체결 또는 사전 동의(광고 50%, 판촉 70% 이상) 절차	전국·지역단위/영업이 부진한 지역은 다르게

				진행	진행 가능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상품권(기프트 카드), 통신사 제휴를 통한 할인행사,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		서비스 할인 금액 등 50% 부담	나머지 50% 부담	협의	당사 부담분을 현물(커피 등)로 제공 가능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가격부문, 신상품관련부분, 상품공급 거래처, 가맹점 운영노하우** 등으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귀하를 포함한 『더 브라운(THE BROWN)』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3)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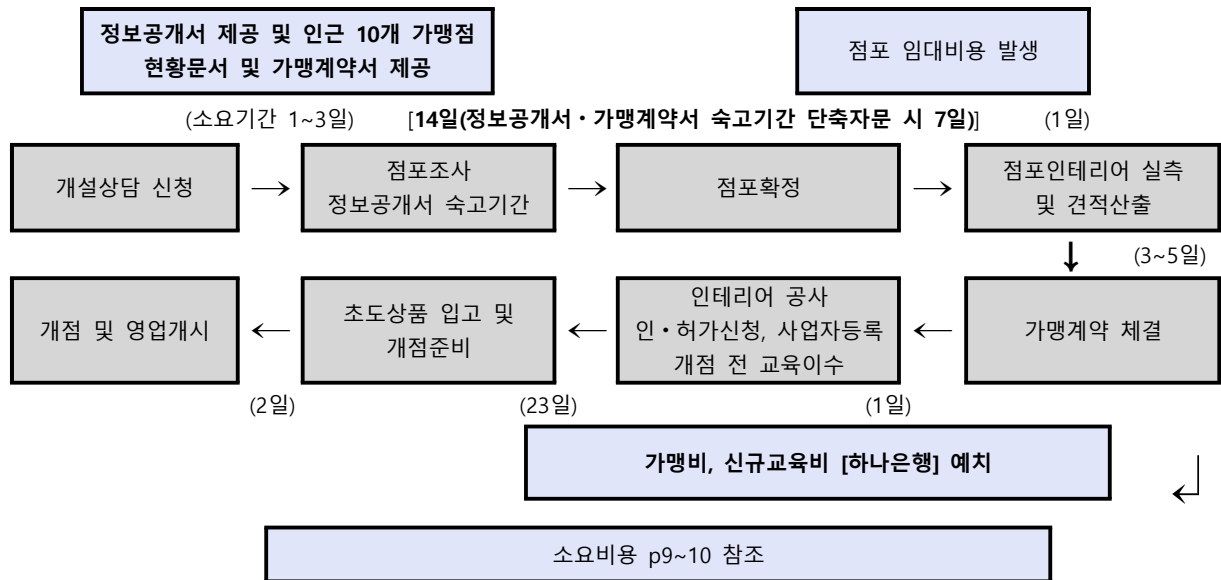
특히 계약 당사자(임원 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당사와 귀하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와 귀하의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등 비용지원 내역

(1)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귀하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총비용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총 비용의 40%		
지급 절차		귀하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당사는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 고		-			

구 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 항목	귀하가 전체 비용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공사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 고		-	

(2) 당사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영업표지의 변경		
당사 부담	비용 항목	간판, 로고 등 영업표지 교체 비용		
	비용 비율	총 비용의 20%		
지급 절차	귀하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	당사는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 분할 지급 가능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영업표지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 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당사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 고
개설지원	가맹점 오픈 시 원두지원 및 인력지원	가맹점 오픈 시 지원	가맹점 오픈 전 2일 오픈 후 2일 총 4일.	원두 1박스, 운영인력 지원	운영인력 지원은 SV 및 직영점 CHEF(셰프)가 지원 근무

3. 경영활동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체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당사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 방문→경영진단→ 귀하에게 경영지도→귀하가 이행	귀하가 부담	비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귀하				귀하의 요청 시 시행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더 브라운(THE BROWN)』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① 매뉴얼 전반교육 ② 커피 · 음료 소개와 제조 실습 ③ 기기 사용법 및 고장 시 응급처치 요령 ④ 원재료 교육 ⑤ 제품 매뉴얼교육 및 실습 ⑥ 위생교육, 서비스 교육 ⑦ 매장서류 교육 ⑧ 발주 및 반품 요령 ⑨ POS 교육 및 실습	이론 및 실습교육	5일	필수교육
재교육 · 특별 교육	① 고객 응대 교육 ② 서비스교육, 상품교육 ③ 시즌별 이벤트, 프로모션 교육 ④ 매장운영 Q & A		추후공지	필수교육
기타 교육	해당 가맹점에 필요한 교육		추후 협의	귀하 요청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더 브라운(THE BROWN)』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5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귀하 1인 기준
재교육 · 특별교육	추후 공지		-
기타 교육	추후 협의	1일당 132	귀하의 요청에 의해 CHEF(셰프) 를 파견하여 교육 · 훈련 숙박비 · 식비 및 교통비 별도 부담

3. 교육 · 훈련의 주체

당사의 교육 · 훈련은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직접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가맹점 개점예정일 전까지 해당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 개점은 교육이수 이후로 연기됩니다.
- (2)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시행하는 재교육 ·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공급 중단사유 ·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고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 하십시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순 번	지 역	명 칭	소재지	비 고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2023년도에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 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당사는 2023년도에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부 : 070-7726-7452

-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044-200-4010

가맹거래과 : help@ftc.go.kr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http://franchise.ftc.go.kr>

별첨 1. (주)프리스코 재무제표

1-1.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1-2.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1. 2023년 재무상태표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2. 2023년 재무상태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3. 2023년 손익계산서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4. 2023년 손익계산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